

고 발 장

고발인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고발인 대표 억 창 연 외 4

서울 응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01호
(연락처: 796-8364)

피고발인 별지와 같음

고발인들은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소속 회원들로서 다음과 같이 우리사회에 거미줄처럼 쳐진 부정과 비리사실을 발견(94. 10. 13. 서울방송 8시뉴스 보도 참고)하고 과거와 같이 사정기관의 자율적 수사에만 맡겨서는 도저히 그 뿌리깊은 관행을 우리 사회에서 추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시민들의 집단적인 고발로서 철저한 수사와 그 처벌을 요구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발하는 바입니다.

다 음

1.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지위

고발인들은 지난 9월 10일 창립된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참여연대) 시민위원회 소속의 회원들입니다. 위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국정에 대한 참여와 감시를 조직화하고 광범한 국민여론의 힘으로 사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탄생한 시민운동단체입니다. 고발인들은 이러한 참여연대의 창립의 취지가 바로 아래에서 보는 우리사회 의 고질적인 부패구조의 고발과 그 근원적인 해결이라고 판단하고 이 고발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발인들은 인천 중구 소재 올림포스호텔 슬롯머신업소(대표 김동호)로부터 매달 기십만원에서 기백만원까지의 뇌물과 향응을 받아온 공무원들로, 첨부된 별지 1. 경찰공무원. 2. 검찰공무원. 3. 세무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은 위 슬롯머신업소의 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받아 오면서 그 업자의 부정행위를 눈감아주거나 일상적인 단속과정에서 불법영업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또는 위 업소의 관련 공무를 이용하여 그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줌으로서 '악어와 악어새'의 비리 그물구조를 이루면서 부정과 부패의 장본인이 되어 온 자들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범행 내용

가. 경찰공무원들의 범행

첫째, 피고발인들은 위 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월정금(이른바 상납금)을 받아오면서 뇌물수수죄를 범하였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 교통계 소속 피고발인 박종규 경장은 9차례에 걸쳐 130만원, 같은 경찰서 보안계 피고발인 김광도는 20여 차례에 걸쳐 420만원 등입니다. 이러한 경찰관들의 수자는 여기서 이루 다 기재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들이 수수한 월정금은 그리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것이 매월 지속적으로 고부 수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공무와 직접 연결되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과 처벌의 가치는 높은 것입니다. 특히 피고발인들이 사정기관의 신경조직을 이루는 최일선 관료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이같은 뇌물 수수관행은 이 사회의 법집행의 엄정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정의감을 마비시키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둘째, 피고발인들은 단속을 실시하면서 그때 그때 일시적으로 뇌물을 수수하였습니다. 이것은 보다 노골적으로 공무집행과정에서 부정과 불법영업을 눈감아주고 돈을 받은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단속나온 경찰관들이 무마비조로 업자로부터 기십만원씩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컨대, 1991. 11. 19. 인천 동부경찰서 방범계 단속반 3명의 경찰관이 단속을 나왔다가 무마비조로 2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가 하면 1992. 4. 경에는 인천지방경찰청 방범계 소속 단속반에게 50만원을 건네주었으며 다시 1992. 10. 에는 역시 같은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단속반원에게 30만원이 같은 명목으로 지급되기도 하였습니다. 1993. 2.에는 관할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단속을 나가 무마비조로 20만원이 전달되었습니다.

세째, 위 업소에 대한 진정을 잘 처리해 달라는 명목으로 고부된 돈을 받음으로써 역시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관할 중부경찰서에 위 업소의 불법영업을 제재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자 1992. 3. 27. 경 위 업소에서 그 무마비조로 250만원을 고부하여 이를 수수한 것입니다.

나. 검찰공무원들의 범행

검찰의 간부직원으로서 위 업소로부터 일상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그 업소의 '울타리'로서 보호막이 되어주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사건과장인 피고발인 장석영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장석영은 1991년 연말경 연말기밀비라는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하였는가 하면 그후 약 1년에 걸쳐 모두 4차례에 걸쳐 1천 4백여만의 돈을 위 업소로부터 받았습니다. 즉 접대비 명목으로 1992. 4. 17. 80만원, 같은해 5. 17.부터 6. 16. 사이에 600만원, 같은해 6. 3. 37만원, 같은해 9. 10. 13만4천원, 같은해 11. 30. 131만원을 수수하였는가 하면 생일을 빙자하여 1993. 2. 10. 26만원을 수수하였으며 1992년 추석에는 1백만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과장과 다른 세명의 수사관들도 350만원의 뇌물을 수수

하였으며 같은 검찰청 강력과장 피고발인 최인남(현재 성남지청 사무국장)도 두차례에 걸쳐 250만원을 수수하였습니다. 최인남 휘하의 강력부 계장 피고발인 전세웅도 260만 원 가량을 역시 위 업소로부터 받았습니다.

지난 1991. 8.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사이에 위 피고발인들을 비롯하여 인천지검 소속의 검찰 수사관들에게 건네간 돈은 무려 2천2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 세무공무원들의 범행

한편 위 업소는 세무처리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불법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하여 관할 인천세무서 근무 공무원들에게 집중적인 상납과 로비, 뇌물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인천세무서 부가세과 과장이 170만원, 같은과 계장 피고발인 정두채는 합계 260만원, 같은과 직원 피고발인 김민섭이 270만원, 김민섭의 후임인 피고발인 흥장목이 210만원을 각각 수뢰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세무서 특소세과 계장이 140만원을 받았으며 위 업소담당 특소세과 직원 백성훈은 거의 매달 빠짐없이 20만원씩 월정금을 받아 합계 420만원을 수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관련 세무공무원들에게 10여만원에서 6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공세를 가하여 인천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수뢰한 돈이 2천6백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3. 본건 범행의 증거자료

피고발인들의 본건 범행은 위 슬롯머신 업소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위 업소의 이사)이 위 엄청난 사실과 함께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공개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위 이사를 소환하여 조사한다면 모든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한편 고발인들 역시 본건 범행사실을 밝힐 수 있는 경리장부등의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바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제출할 것입니다.

4. 본건 범행의 성격과 본건 고발의 의미

위에서 간략히 설명한 본건 범행은 위 호텔의 슬롯머신 업소가 관할 경찰, 검찰, 세무공무원에게 벌인 뇌물공세의 일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건 범행은 어느 지역에서나 발견될 수 있는 평범한 범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를 피고발인들이나 일반 시민들조차 이 정도 범행을 가지고 새삼스럽게 문제삼는가 또는 털어 그정도의 먼지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항변을 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지고 보면 그동안 우리사회를 '뇌물공화국'이라는 자조어린 표현도 있었습니다. 동네 작은 구멍가게를 경영하는데도 수십군데의 기관과 공무원에게 뜯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속속들이 곽고 부패한 우리사회의 어두운 모습입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신한국'이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높이 올린 사회개혁의 가치였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요란한 구호는 이제 사라지고 잠시 움츠리고 있던 부패와 비리의 관행이 완전히 되살아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뇌물 수수는 용인하여야 한다는 항변은 바로 뇌물로 얼룩진 우리사회의 절망적인 모습에 대한 자조에 다름아닙니다. 이러한 작은 뇌물은 계류된 이권이 커지면 그 금액도 커지는 것으로서 언제든지 거액의 뇌물로 변하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액의 다과를 가지고 뇌물수수의 범죄 처단의 잣대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공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그 공무를 선택한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반이요, 공정한업무의 집행을 파괴하고 국민의 협세를 죽내는 일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건 범행에 가담한 수많은 공무원 가운데 그 경증을 가려 대부분의 피고발인들을 구속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정상사유가 있어 불구속으로 조치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부정한 돈을 얼마간이라도 받은 공무원은 모두 공직에 추방할 것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국민의 곳간을 죽내는 새암취에 다름없는 이들을 어떻게 공직에 남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의 생선가게를 이들 고양이에 맡겨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처벌과 공직추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뜻을 함께 하는 국민과 함께 본건 범행의 처리과정을 부릅뜬 두 눈으로 고발하고 감시하고 확인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1994년 10월 14일

위 고발인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 연대)소속

대표 고발인 이 창 연(직장인, 30)
 유 정 애(주부, 25)
 이 두 완(학생, 25)
 김 경 환(직장인, 30)
 이 승 희(학원강사, 27)

인천지방검찰청 귀중

별지 (피고발인 명단)

1. 경찰공무원

박종규(인천 중부경찰서 교통계 경장)
아무개(인천 중부경찰서 보안과장)
김광도(인천 중부경찰서 보안계)
윤아무개(인천 중부경찰서 방범과장)
채아무개(인천 중부경찰서 형사계)
정성일(인천 중부경찰서 방범지도과장)
최아무개(인천 중부경찰서 형사계장)
이정남(인천 중부경찰서 형사계 반장)
유봉호(인천 중부경찰서 형사계 반장)
하주영(인천 중부경찰서 형사계 경장)
김정남(인천 중부경찰서 방범계 경장)
김남형(인천 중부경찰서 방범계 경장)
아무개(인천 중부경찰서 중부서장)
아무개(인천 중부경찰서 방범과장--92.9. 이후)
김승수(인천 지방 경찰청(당시 시경) 방범계 직위불상)
이하우(인천 지방 경찰청 강력주임)
김달영(인천 지방 경찰청 신원계장)
김부일(인천 지방 경찰청 특수대 직위불상)
최영한(인천 지방 경찰청 강력계 직위불상)
조은수(인천 지방 경찰청 방범계 주임)
김광원(인천 지방 경찰청 형사계장)
김종철(인천 지방 경찰청 방범대장)
조정림(인천 지방 경찰청 방범지도계)
명노환(인천 지방 경찰청 형사계 직위불상)
김찬섭(인천 지방 경찰청 방범계 직위불상)
김동철(인천 지방 경찰청 형사계 직위불상)
안준호(인천 지방 경찰청 보안과장)
아무개(인천 지방 경찰청 형사과장)
고석종(인천 하인천 파출소 경장)

2. 검찰공무원

장석영(인천 지방검찰청 사건과장)
최인남(인천 지방검찰청 강력과장)
전세웅(인천 지방검찰청 강력부 계장)
한승동(인천 지방검찰청 강력부 직위불상)

장세혁(인천 지방검찰청 형사)

3. 세무공무원

정두채(인천 지방 세무서 부가세계장)

김민섭(인천 지방 세무서 부가세과 직위불상)

홍장복(인천 지방 세무서 직위불상)

아무개(인천 지방 세무서 부과세과장)

윤우영(인천 지방 세무서 부가세계 반장)

백성문(인천 지방 세무서 특소세과 직위불상)

아무개(인천 지방 세무서 특소세계장)